

치매안심신탁_계약서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25년 10월 31일

2. 개정 내용

현행	개정안	비고				
100년안심신탁 계약서 제1조-제7조 (생략) 제8조 <table><tr><td>운용내역 통보 방법</td><td>☐ 자택우편, ☐ 직장우편, ☐ 전자우편(E-mail), ☐ 그 밖의 전자통신(문자메세지, 스마트폰 앱 등) ☐ 통보생략(불인) 위탁자: _____ (인/서명)</td></tr></table> 제9조-제11조 (생략) 제12조 ①, ② (생략) ③ 위탁자의 사망사실 통보의 지연 및 허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제13조 ① (생략) ② 제 1항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다. 단, 위탁자는 신탁재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	운용내역 통보 방법	☐ 자택우편, ☐ 직장우편, ☐ 전자우편(E-mail), ☐ 그 밖의 전자통신(문자메세지, 스마트폰 앱 등) ☐ 통보생략(불인) 위탁자: _____ (인/서명)	<u>치매안심신탁</u> 계약서 제1-제7조 (좌동) 제8조 <table><tr><td>운용내역 통보 방법</td><td>☐ 자택우편, ☐ 직장우편, ☐ 전자우편(E-mail), ☐ 통보생략(불인) 위탁자: _____ (인/서명)</td></tr></table> 제9조-제11조 (좌동) 제12조 ①, ② (좌동) ③ 위탁자의 사망사실 통보의 지연 및 허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<u>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,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u> 제13조 ① (좌동) ② 제 1항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<u>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,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u> 단, 위탁자는 신탁재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	운용내역 통보 방법	☐ 자택우편, ☐ 직장우편, ☐ 전자우편(E-mail), ☐ 통보생략(불인) 위탁자: _____ (인/서명)	■ 상품명 변경 ■ 그밖의 전자통신 항목삭제 ■ 책임부담 주체 명확화 (금투협의건 반영) ■ 책임부담 주체 명확화 (금투협의건 반영)
운용내역 통보 방법	☐ 자택우편, ☐ 직장우편, ☐ 전자우편(E-mail), ☐ 그 밖의 전자통신(문자메세지, 스마트폰 앱 등) ☐ 통보생략(불인) 위탁자: _____ (인/서명)					
운용내역 통보 방법	☐ 자택우편, ☐ 직장우편, ☐ 전자우편(E-mail), ☐ 통보생략(불인) 위탁자: _____ (인/서명)					

현행	개정안	비고
제14조-제19조 (생략)	제14조-제19조 (좌동)	
제20조 ①, ②, ③ (생략)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취 신탁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,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 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.	제20조 ①, ②, ③ (좌동) ④ 삭제	■ 계약자체의 선취보수 미적용으로 항목 삭제
제21조-제25조 (생략)	제21조-제25조 (생략)	
제26조 ①~④ (생략)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『100년안심신탁 계약서』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⑥ (생략)	제26조 ①~④ (좌동)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『 치매안심신탁 계약서』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⑥ (좌동)	■ 상품명 변경
제27조-제34조 (생략)	제27조-제34조 (좌동)	